

독일의 민사복무제도 관련 출장보고서

사회보장연구본부 기초보장평가센터

최 현 수

《 독일 민사복무제도 현지 방문조사 개요 》

□ 목 적

- '08년도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대비, 독일의 민사복무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과 교육운영 방안 모색
 - 민사복무청 및 민사복무학교,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 및 민사복무기관 등을 방문하여 각 전달체계별 역할 및 관계,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함

□ 기 간 : 2007. 9. 4 ~ 9. 12 (9일)

□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 면담자)

- 민사복무청 (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 BAZ / Köln)
 - * 민사복무청장 : Helga Roesgen
 - * 대외홍보·언론담당관 및 실무 : Ruediger Lohler / Peter Schlossmacher
- 민사복무학교 (Zivildienstschule, ZSch / Herdecke)
 - * 민사복무학교장 : Garling
-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 (Zivildienstgruppe, ZG / Köln)
- 민사복무기관 (Zivildienststelle, ZDS / Köln & Pesch)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Gemeinnützige Werkstätten)
 - 노인요양시설 (Caritas, Altenheim St. Heribert)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Bonn)
 - * 민사복무담당 정책자문관 (Bundesbeauftragte) : Dr. Kreuter
- 사회복지단체 소속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 (Verbände, VB / ASB / Köln)
- 사회복지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ASB(Arbeiter Samariter Bund) / Erfstadt)
- 지역 민사복무담당관 (Regionalbetreuer, RB / Köln 담당) : Stefan Deckert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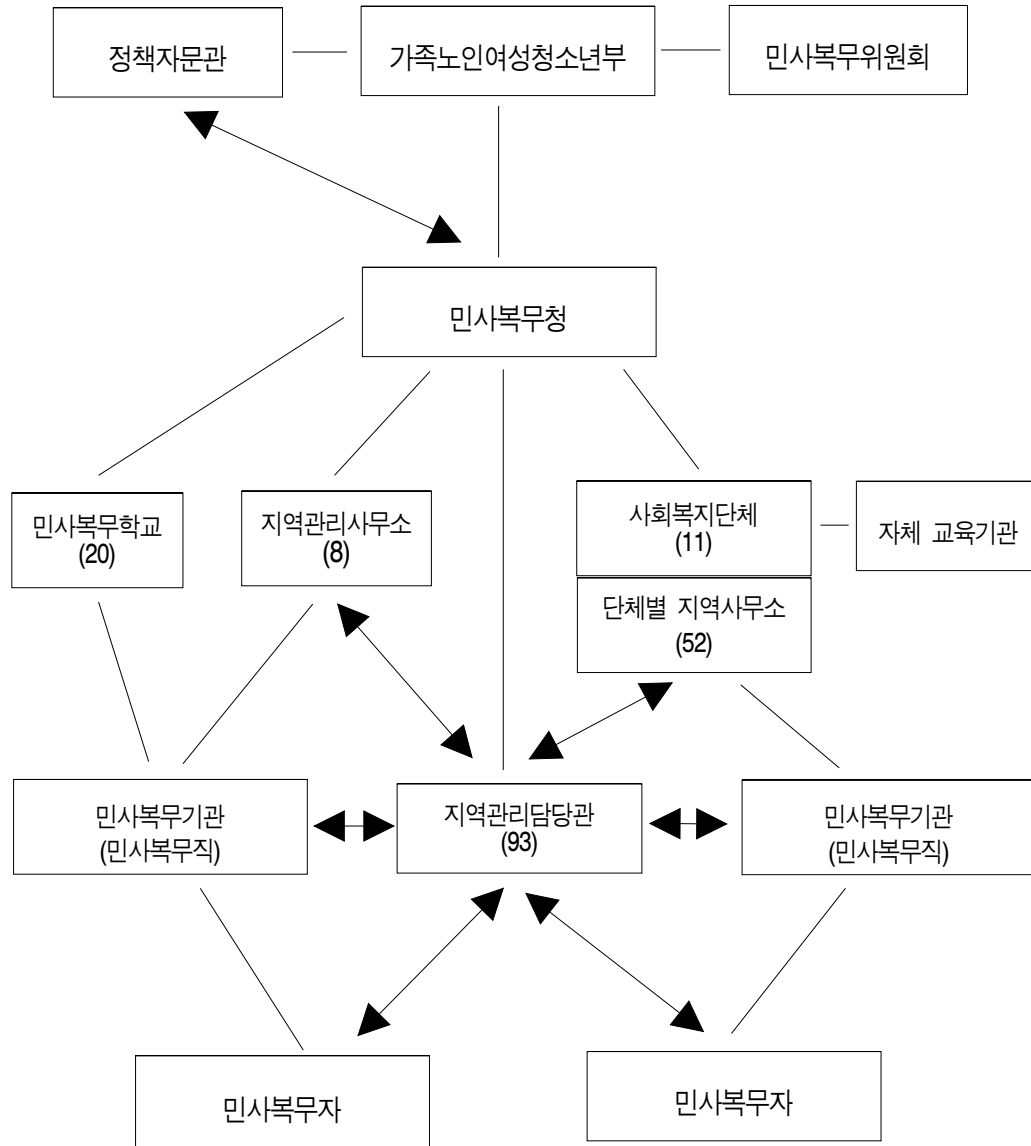
-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민사복무담당 정책자문관을 방문하여 민사복무제도의 역사 및 정책목표, 최근의 정책동향을 파악
- 민사복무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을 면담하여 교육운영 실태 및 교육계획 수립방법 등을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하여 담당교사 및 교육생을 면담
- 민사복무기관을 방문하여 복무관리 담당자 및 복무자를 상담하고 복무관리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파악
-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 및 사회복지단체 소속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사복무제도 운영 관련 행정업무 사항 및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 확인
- 지역 민사복무담당관과 동행하여 복무관리체계 및 복무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파악

[독일 민사복무제도 주요내용]

1. 민사복무제도의 역사적 전개

- 1949년 : 헌법과 병역기본법을 근거하여 병역의무제도 실시
 - ※ 병역기본법 4조 3항
 - ☞ “그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드는 전쟁병역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 1956년 : 병역거부자를 위한 의무복무의 법적근거 마련
 - ※ 병역기본법 12a조 2항
 - ☞ “양심을 이유로 무기를 드는 전쟁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1960년 : 병역거부자가 나타나면서 1961년부터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 의무부여 여부에 대해 정치적 이슈화
 - ※ 1960년 1월 대체복무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으며, 1961년 4월부터 340명의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 1973년 10월 1일 : 연방 노동사회부 내에 독립적인 연방관청으로 민사복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민사복무청 설립
 - ※ 현재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산하기관으로 병역거부 및 민사복무 업무 담당
- 1984년 : 민사복무청은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의 병역거부 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업무 시작
- 2003년 : 병역거부와 관련된 연방의 각종 위원회가 해산되고, 연방 민사복무청이 모든 병역거부자의 신청과 승인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

2. 민사복무제도의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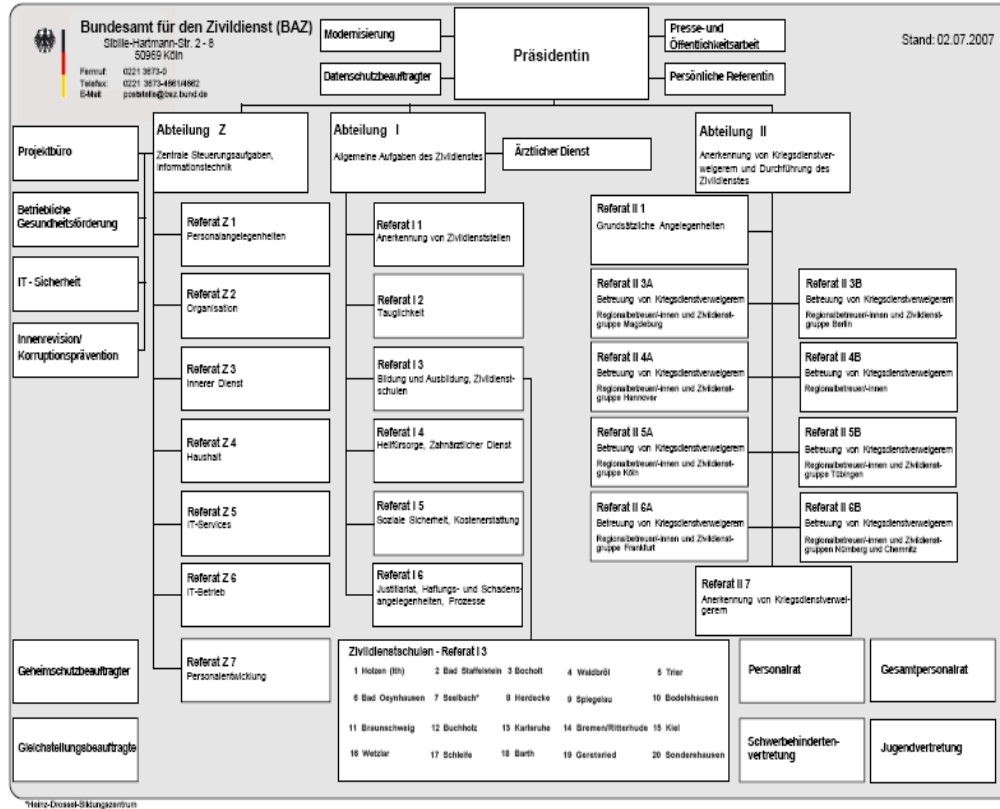
3. 민사복무제도의 운영주체



4. 각 주체별 역할분담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연방정부로 민사복무에 대한 정치적 결정 사항을 민사복무청에 제시
- 민사복무청((Bundesamt fur den Zivildienst; BAZ)
 - 민사복무관리의 최상급기관으로서 민사복무관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짐
 - ※ 공식적인 민사복무자 징집은 민사복무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 민사복무대상자 결정, 민사복무기관 승인, 지역관리소 및 지역상담보호관 관리 업무
 - ※ 병역의무 대상자가 병역거부를 신청하면 민사복무대상으로 결정
 - ☞ 법원에 의한 재판식 결정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민사복무청이 신청 받아 대상자 결정

<민사복무청 조직도>



○ 병무청(Keiswehrrersatzamt; KWEA)

- 국방부 소속으로 BAZ와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 업무와 현역군무자 중 현역군무 거부 신청자에 대한 병적부를 BAZ에 송부하는 역할 담당

○ 지역 민사복무관리소(Zivildienstgruppe; ZG)

- BAZ의 행정집행기관으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역관리소 설치
- BAZ의 지시에 따라 민사복무기관에 대한 관리 및 통제와 민사복무자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관할 본부의 역할을 수행
- 지역관리사무소(ZG)는 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민사복무기관을 관리

<민사복무청에 의해 지역관리사무소에 위임된 행정업무>

- | | |
|----------------------------------|--------------------|
| · 민사복무자의 복무시작 확인 | · 민사복무자의 복무관련 출장지시 |
| · 민사복무자의 특별휴가 승낙 | · 민사복무자의 부가적 활동 승인 |
| · 민사복무자가 출퇴근하지 않고 숙식하는 것에 대한 규제 | |
| · 민사복무자와 복무기관에 대한 민원 검토 및 시정조치 등 | |

○ 사회복지단체 소속 지역 민사복무관리소(Verbande; VB)

- 전국의 11개 사회복지단체별로 소속 기관(민사복무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관리사무소를 설치
- BAZ와 행정업무계약에 따라 ZG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

○ 민사복무기관(Zivildienststelle; ZDS)

- ZG 관할의 복무기관과 VB 소속의 복무기관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전체 복무기관의 약 20%, 후자는 80%가 관리대상으로 속해 있음
- ZDS는 BAZ의 통제 속에서 각각 ZG와 VB의 지시를 받음

○ 민사복무자(Zivildienstleistender; ZDL)

- ZDS와 BAZ의 통제를 받으며 본인이 선택한 민사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서 직무 수행

○ 지역 민사복무관리 담당관(Regionalbetreuer; RB)

- 1971년부터 각 지역을 담당하여 민사복무기관과 복무자를 관리하는 담당관 배치
- 민사복무청에 직접 소속된 93명의 지역 민사복무관리 담당관이 전국을 분할하여 각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음
- 이들은 담당지역 내에서 민사복무자와 민사복무기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 민사복무제도에 있어서 복무관리의 핵심요소로 평가됨
-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복무기관과 민사복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각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93명의 지역 민사복무관리담당관(RB)은 민사복무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상의 문제에 대하여 현장 확인, 상담, 해결하고 지역 관리사무소 및 민사복무청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
- 각각 개인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해진 시간동안 전화상담, 행정업무 등을 위해 내근을 실시한 후, 나머지 시간에는 대부분 민사복무기관 현장방문 등 외근을 실시함

<민사복무관리 담당관 배치 지역>



5. 민사복무대상 및 민사복무 수행절차

- 18~23세의 남성으로 양심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 신청자
- 신체검사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해 민사복무대상자로 판정되면 병무청으로부터 모든 관리의 책임이 민사복무청으로 이관
- ※ 전쟁병역거부 승인 신청: 18세가 지나기 6개월 전까지(예외: 병역기본법 2조 5항), 양심에 기초한 결정임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

○ 민사복무기관 결정 및 복무수행과정

- 민사복무대상자에게 징집계획에 대한 통지서 발송
- 복무대상자는 2개월 이내에 민사복무청 홈페이지(www.zivildienst.de), 거주지역 관할 지역관리사무소, 지역별 민사복무관리담당관, 거주지역에 위치한 민사복무기관 등을 통해 해당 시점에서 남아 있는 민사복무기관(ZDS)별 민사복무직(ZDP)을 확인

<민사복무청 홈페이지 내 민사복무기관 검색을 위한 배너>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역 내의 민사복무기관과 사전에 접촉하고 상호 협의하여 특정분야의 민사복무직을 선택하고, 해당 복무기관과 합의서(민사복무기관 및 민사복무직, 세부 직무내용, 복무시작과 종료시점)를 작성한 후 민사복무청에 제출하면 민사복무청은 이를 심사하여 민사복무소집을 통지

※ 90% 이상의 민사복무자들이 본인의 탐색과 선택에 의해 복무기관 결정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복무기관 선택 후 변경 가능)

- 해당 복무기간에 대상자는 민사복무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하고 민사복무청에서 정해진 교육훈련 일정에 맞춰 각 지역별로 민사복무학교에 입소
- 민사복무학교에서 약 3~4주간(1주 소양교육, 2~3주 직무교육) 교육 후 다시 민사복무기관으로 복귀하여 복무종료 시까지 근무

※ 전체 복무기간: 의무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9개월

○ 민사복무자가 제대하는 경우

- 민사복무자의 복무기간(9개월) 만료
- 복무기간 만료 이전일지라도, 민사복무법 43조 1항 Nr.2~11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을 제시할 경우와 민사복무를 계속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제대 가능

6. 민사복무제도 운영 인력현황

- 민사복무청 직원 : 1,064명 (켈른 소재)
-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 : 8개, 각 지역 사무소마다 각각 3~4명
- 민사복무학교 : 20개 학교에 과정별 전임교사, 외부강사, 행정요원 등으로 운영
- 지역 민사복무담당관 : 93명

7. 민사복무청 주요조직별 담당업무

- I 1 : 민사복무기관과 해당기관의 민사복무직 승인 및 관리
 - 민사복무기관의 공공지향성 심사에 중점
 - 민사복무자가 복무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 및 환경보호 영역에서의 배치 가능성 검토
 - 민사복무기관 소속 인력에 의한 복무자 관리가능성 및 전문적/인도적 지원가능성 심사
 - ※ 대개의 경우, 민사복무기관별로 복무관리 담당자 지정
 - 향후 민사복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에 대한 신뢰가능성 및 정보의 정확성 검토
- I 2 : 민사복무자에 대한 의학적 검토 업무
 - 약 11,000명의 연방 위촉 의사들의 협조 하에 수행
 - 민사복무자에 대한 신체검사, 복무능력 검사, 상해 발생 시 검사 등
 - 의학적 판결에 따른 민사복무자의 행정 조치 담당
- I 3 : 민사복무자 교육 전반, 민사복무학교와 교육프로그램 관리
 - 민사복무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민사복무학교의 전문성 및 교육내용 관리
 - 사회복지단체별 자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고유성과 전문성 검토 및 재정지출 검토
- I 4 : 민사복무자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담당
 - 민사복무자의 의료보험 및 질병치료에 대한 비용 검토 및 지불
 - 민사복무자의 치료에 대한 승인 및 비용에 대한 공제와 승인

- 민사복무자의 상해 관련 보상금 지급 결정, 복무능력 검사, 제대 가능한 의학적 소견 등에 대한 검토
- I 5 : 민사복무자의 급여 및 기타 비용 지원에 대한 업무
 - 민사복무자의 급여지급 및 사회보험료 부담
 - 민사복무자의 출장비, 교통비, 제대비 등의 지급
- I 6 : 민사복무 관련 법률적 사항
 - 각종 사고에 의한 민사복무자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일반적인 법률 사항 처리
- 정보 보호 담당관
 - 연방정부의 정보호법에 의거하여 민사복무자의 병역거부 사유나 복무기록 등 사적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업무
 - 규정에 따른 정보처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 각종 상담기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관련 상담 및 자문
 - 민사복무청 직원에 대한 정보 관련 교육
 - 보안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각종 정보 보호
- 대외 홍보 담당관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민사복무제도의 홍보
 - 민사복무기관 및 복무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Zivildienst) 제작 및 배포
 - 민사복무제도 관련 각종 통계작성 및 정리
 - 민사복무청 방문자에 대한 각종 지원
- Z 1 : 민사복무청 인력관리 업무
- Z 2 : 기획 및 전략수립 업무
- Z 3 : 민사복무청 내부관리 업무
- Z 4 : 민사복무청 예산 관련 업무
- Z 5 : 민사복무청 IT Service 업무
- Z 6 : 민사복무청 IT 운영 업무
- Z 7 : 민사복무청 인력개발 업무

8. 민사복무제도 관련 예산 및 복무기관 비용부담 현황

- 예산 규모 : 633,587,000유로 (2007 회계연도)
- 예산지출 구성비
 - 민사복무청 기관운영비 : 6%
 - ※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 민사복무학교, 지역 민사복무담당관 운영비 포함
 - 민사복무자 지원비용 : 92%
 - ※ 이 중 사회보험료(연금, 실업, 산재) 46%, 급여 및 제대수당 37%, 의료보험료 9%
 - 민사복무기관이 소속된 사회복지단체 지원 : 2%
 - ※ 사회복지단체 소속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 및 교육기관 운영비 일부 지원
- 민사복무기관의 비용부담 현황
 - 복무기간 중 식비, 피복비, 교통비는 복무기관이 전액 부담
 - 급여 및 제대수당은 복무기관이 30% 부담
 - 복무시작 및 제대 시 이동비용 및 출장비용은 민사복무청에서 지급
 - ☞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사복무기관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민사복무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관의 복무관리 책임성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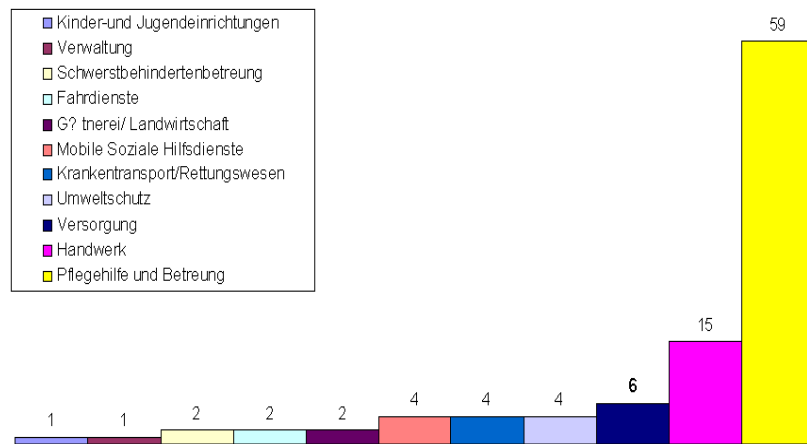
9. 민사복무분야 및 직무

- 민사복무제도의 주요 활용분야는 공공성을 지향한 공공업무를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 분야(약 95%) : 노인·장애인 수발보조, 응급구조, 간호 보조 등
 - 환경 분야(약 5%) : 환경보호, 농업지원, 수자원관리, 정원관리, 건물관리·수리 등
 - * 민사복무기관별로 세부적인 직무분야에 따라 민사복무직의 수를 사전에 승인함
- 민사복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운영
 - 민사복무 대상자이나, 승인된 민사복무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민사복무에 대한 대체복무로 인정해주는 제도

<민사복무에 대한 대체복무 가능 영역>

- | | |
|-------------------|-----------|
| · 민사보호 또는 국가 재난구조 | · 개발업무 |
| · 해외원조 및 봉사단체 참여 | · 자원봉사 참여 |

○ 민사복무자의 직무별 배치현황¹⁾



○ 민사복무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사항은 없음

- 민사복무분야는 복무대상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업무의 난이도는 본인의 적극성과 능력 등 주관적인 특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분야 및 직무에 대한 우선순위 및 인센티브(복무기간 차등, 급여 차등 등) 없음

- 단, 정책적으로 많은 복무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분야는 복무기관별로 민사복무직의 정원으로 결정할 때 직무분야별로 유도함

※ 예를 들어, 복무기관의 민사복무직 정원이 5명일 경우 노인수발 4명, 시설관리 1명으로 승인하여 수발 분야로 민사복무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함

⇒ 복무제도의 정책목표를 민사복무자에게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데 돕으로써 직업과의 연계를 유도

1) Kinder-und Jugendeinrichtungen: 아동·청소년단체 / Verwaltung: 행정사무, Schwerstbehindertenbetreuung: 중증장애인보호, Fahrdienste: 철도업무, Landwirtschaft: 농업지원, Mobile soziale Hilfsdienste: 사회문제 보조업무, Krankentransport/rettungswesen: 환자이송/응급구조, Umweltschutz: 환경보호, Versorgung: 식사지원, Handwerk: 직업지원, Pflegehilfe/betreuung: 보살핌/보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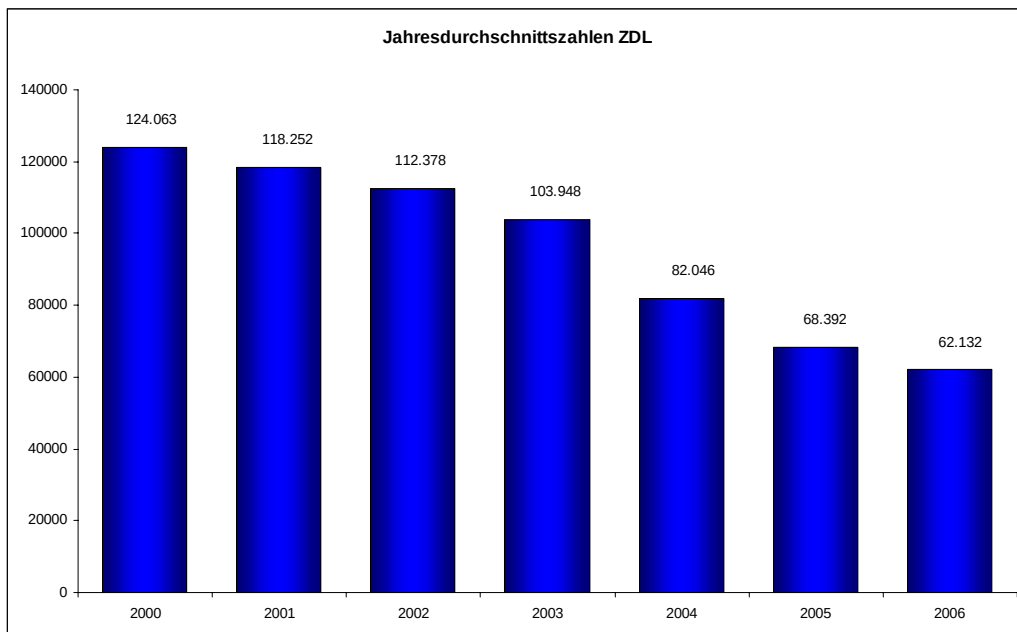
10. 민사복무기관 지정

○ 민사복무기관 지정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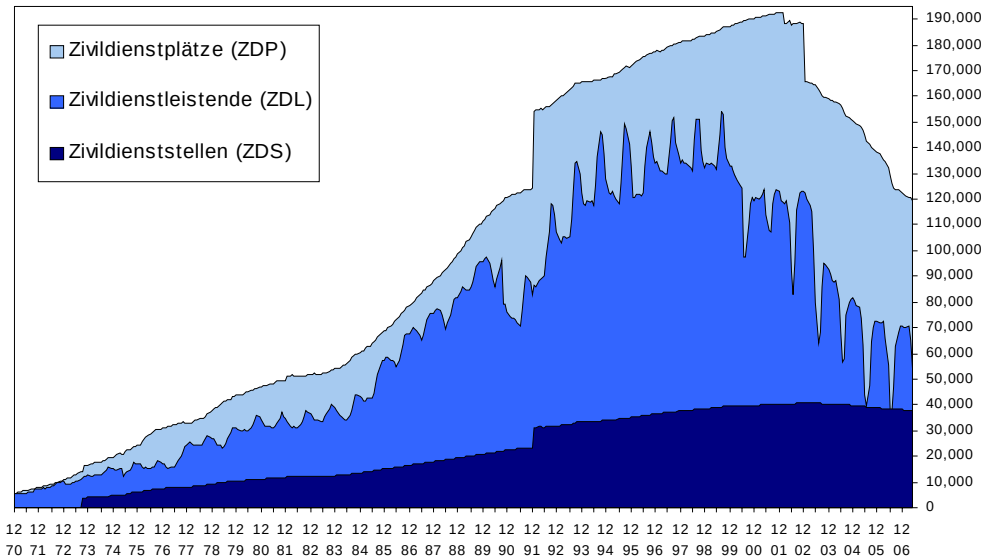
- 비영리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사복무자에게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이 복무기관 지정을 원할 경우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갖추어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민사복무청에 신청함
- * 사회복지단체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단체 소속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민사복무청에 신청
- 민사복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조건을 위반하거나 비용부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민사복무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민사복무직이 축소됨
- * 민사복무기관 지정 심사 및 취소권자는 민사복무청

11. 민사복무자(ZDL) 변화 추이

- 2000년 이후 매년 민사복무자 수가 감소하여, 2006년에는 2000년 12만 4천명의 50% 수준인 6만 2천명까지 감소



<민사복무기관, 민사복무직, 민사복무자 규모 변화추이(197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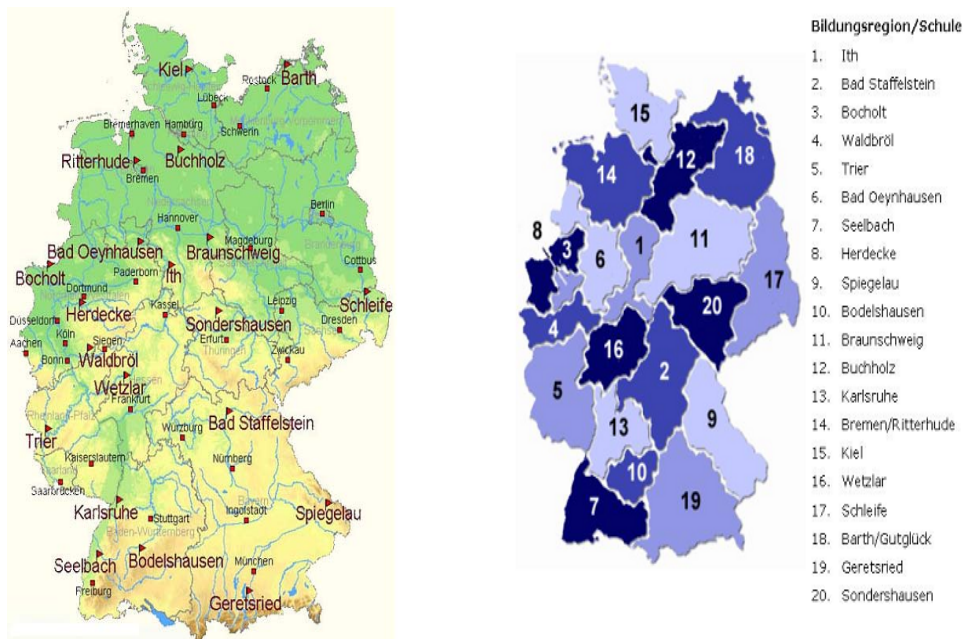
구 분 (단위: 1,000명/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민사복무직(ZDP)	50	67	120	177	190	124
민사복무자(ZDL) (ZDP 대비 비율)	40 (80%)	60 (90%)	73 (61%)	120 (68%)	124 (65%)	68 (55%)
민사복무기관(ZDS)	13	16	26	38	40	38.5

- 민사복무직(ZDP)의 수가 민사복무자(ZDL)의 수 보다 항상 많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복무인력들의 복무기관 및 세부 복무분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민사복무청 및 지역 관리사무소는 복무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과 동시에 정보연계 및 제 공을 통해 복무기관 및 세부 복무분야 탐색, 선택, 결정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
 - 이와 같이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개인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성공 적인 복무관리에도 기여함

12. 민사복무학교

- 민사복무청 소속으로 전국에 20개의 민사복무학교가 있음
 - 1971년 10월 최초의 민사복무학교가 Weserbergland의 Ith에 설립됨
 -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서 새롭게 편입된 주정부(작센 주 Schleife)에도 처음으로 민사복무학교가 설립됨
- 각 학교별로 다양한 민사복무 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복무대상자는 거주지 및 복무기관 인근의 민사복무학교로 배정 가능
 - 소수의 민사복무자가 배치되는 환경보호 관련 직무교육의 경우, Barth(18)에 위치한 민사복무학교에만 교육프로그램 마련

<민사복무학교 설치 지역>



13. 민사복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방정부에서 교육운영 예산을 전액 지원
- 민사복무청(13)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사복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
- 교육대상
 - 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민사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민사복무자(전체의 20%)
 - 민사복무자와 기관이 결정하고 민사복무청이 승인한 날짜에 복무가 시작되면 민사복무자는 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교육소집일정에 맞춰 민사복무학교로 입소²⁾
 - 교육기간 중에는 거주지에 가까운 곳일지라도 의무적으로 합숙교육을 원칙으로 함
- 교육과정 개발
 - 민사복무청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가이드라인 제시
 - 민사복무학교는 이를 토대로 각 담당교사별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담당교사는 매 기수마다 사전에 교육대상자의 정보를 참조하여(학력, 경력, 관심분야 등)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및 수준 등을 조정함
- 교육내용
 - 1단계 소양교육 : 민사복무의 의무과 규범에 대한 교육 (1주)
 - 2단계 직무교육 : 업무영역별로 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3주)
 - 직무교육 과정의 내용은 기수별 평가결과와 각 민사복무기관에서 복무자의 근무 상황을 토대로 요구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조정함
 - 직무교육 과정중의 실습³⁾ 비중은 복무기간이 현재의 9개월로 단축되기 이전에는 3주 가운데 1주를 의무화했으나 현재는 자율적으로 정함

2) 대개, 복무시작 1개월 전후 입소함

3) 중증장애인 원조, 노인 및 환자, 장애인 보조, 이동 사회서비스 등을 주제로 실습

[시사점]

1. 정책방향

○ 독일 민사복무제도의 정책목표

- 첫 단계 단계(시행초기): 국가방위라는 최우선 정책목표 하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대체복무의 이미지 쇄신
- 두 번째 단계(1980년대 중반):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안녕을 가져오고 사회봉사 기반 마련
- 세 번째 단계(현재) : 청년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탐색과 발전 가능성을 높임

* **“Zivildienst als Chance!”** (민사복무제도는 기회!)

☞ 2006.11 개최된 민사복무청 워크숍의 슬로건

* 단,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민사복무직을 승인하고 이에 복무자를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중립성을 유지

○ 독일은 시행초기부터 제도시행에 대한 반대여론을 극복하면서 민사복무제도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목표를 두었음

- 사회복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무행정차원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청년 인적자원의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함
- 노동시장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구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분야 또는 직무에 대해 복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값싼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함

2. 운영방향

- 독일의 민사복무제도 업무는 전적으로 수요부처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산하의 민사복무청에서 담당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줌
 - 이처럼 민사복무제도를 수요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산하 민사복무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신체검사 및 병역거부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이관되는 순간 민사복무자의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인식과 민사복무기관 및 직무가 사회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임
 - * 연방 민사복무 정책자문관인 Dr. Kreuter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누구를 민사복무자로 결정할 것인가는 양심선언으로 판단하는데, 양심선언의 진위여부를 군인들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판단할 경우 편의에 따라 현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판단의 중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봄. 이에 따라 판단의 중립성을 갖기 위해 법으로 기준을 만들어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임
 - * 독일의 민사복무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민사복무자의 사회적, 개인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국방부(징병제)와 수요부처(민사복무제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임을 언급
 - ☞ 독일 통일 이후, 병력이 감축되고 징병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무대상자는 본인의사(양심선언)가 아닌 신체조건으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독일의 상황과는 다름
 - 그러나, 현재 구축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의 전달체계가 병무청을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사회복무자의 신분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으로 인식됨으로써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발전의 가치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에 제약이 따름
 -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복무대상자들이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보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부처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병무청과 수요부처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인 사회복무위원회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될 예정인 복무관리센터의 활용방안과 역할분담 재정립과 구체화가 필요함
- 사회복무제도가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익근무제도 등과 차별화된 복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복무관리센터와 상담보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병무청 인력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인력들이 함께 활용되어야 함

-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복무기관 관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제도 전반, 사회복지기관 및 직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병무청과 수요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함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무기관과 복무대상자간 상호선택제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 및 직무에 대한 복무자의 선택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복무관리 상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3. 교육훈련

- 독일은 교육훈련대상의 약 80%를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마련된 교육시설을 활용
 - 민사복무자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 기존의 교육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단체간의 편차가 심하고 교육시설 여건이 취약하여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 교육시설은 정부에서 직접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경우처럼 교육생의 편의도모와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숙식이 가능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 ☞ 현재 각 시도별로 분포되어 있는 폐교 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음